

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

- [면제대상] 9월 15일 00시 ~ 9월 18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
- [면제방법]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(하이패스 장착, 통행권 발급)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(9.15~9.18)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*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* 명절기간(9.16~9.18)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(9.15 추가)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(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)

○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15일(일) 00시부터 9월 18일(수) 24시 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.

※ (예시) 9.14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9.15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9.18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.19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 면제



□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,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“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”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,

○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하고,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.

□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9월 15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도로국	책임자	과장	강태석 (044-201-3875)
	도로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최용관 (044-201-3883)